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42

발의연월일 : 2024. 8. 21.

발 의 자:김준형・김태년・박지원

정춘생・조 국・이해민

진선미 · 김태선 · 박희승

이훈기 · 정을호 · 김남근

김성환 · 서왕진 · 황운하

박은정 • 김한규 • 신장식

이기헌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북한으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함.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전단등 살포로 인해 위협받을 수 있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함은 인정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전단등 살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상태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지속되며 북한에서 이에 대응하여 대남

오물풍선을 부양하는 등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전단등 살 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남북간 평화 유지를 위하여 정부가 남북연락망 개설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등).

법률 제 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 앞의 "제5장 벌칙"을 "제6장 벌칙"으로 한다. 제5장(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남북간 평화 유지 노력

- 제24조의2(남북연락망 개설 및 유지) 정부는 남북간 우발적 충돌 예방, 재난·재해 공동 대응, 정전상태의 평화적 유지 등을 위한 남북연락망(남북간 통신할 수 있는 전화, 팩스 등의 연락 수단을 의미한다)을 개설 및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4조의3(남북간 적대행위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의 전

단등 살포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6장에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24조의3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u><</u> 삭 제>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	
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	
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	
서는 아니 된다.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	
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	
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u>게시</u>	
<u>3. 전단등 살포</u>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5장 남북간 평화 유지 노력
<u><신 설></u>	제24조의2(남북연락망 개설 및

<신 설>

유지) 정부는 남북간 우발적 충돌 예방, 재난·재해 공동 대응, 정전상태의 평화적 유지 등을 위한 남북 연락망(남북간 통신할 수 있는 전화, 팩스 등의 연락 수단을 의미한다)을 개설 및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의3(남북간 적대행위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 에 대한 확성기 방송
-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게시
-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에서의
 전단등
 살포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제5장 벌칙

제25조(벌칙) 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 설>

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u><삭 제></u>

제26조(과태료) ① 제24조의3제1 항의 각 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